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시심7

시 정 요 구 인 최영일
전북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열린순창(열린순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4, 2층
대표이사 임재호

심의대상기사 [별지] 기재

주 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가족과 관련한 의혹, 펀드 미상환 논란, 피고발 사실 등 시정요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다수 보도한 반면, 상대 측 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였다면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 및 형평성 등을 지속적으로 위배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는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지면 배치도 상대 측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편집하였으며, 기고문에서는 사실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만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다수 위반하였다면서 경고결정문 게재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과 공직자의 책임 문제를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이지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작성한 기사가 아니며, 특정 이슈에 대해 두 후보의 답변을 균등하게 편집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시정요구인의 입장문을 그대로 게재한 바도 있고, 기사 배치가 편파적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기고문의 경우 논평 및 의견의 영역이자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면서 시정요구인의 경고결정문 게재 요구는 언론의 자유와 지역 언론의 감시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적격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후보자에게 위법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나, 의혹의 당사자인 후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20.자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의 자유 중 편집의 자유란 무엇을 공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자유라 할 수 있고, 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법률 등에 의해 보장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참조). 다만, 언론은 그 자유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아울러 져야하는 바, 공직선거법 제8조가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벗어난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7. 8.자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심의대상기사가 당시 현직 군수였던 시정요구인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검증성 보도라는 점에서 단순 후보자와 관련한 기사보다는 그 영역을 더 넓게 볼 여지가 있고, 대체로 시정요구인의 반론 내지 해명문이 반영된 점, 기사 배치나 기고문상 나타난 의견 표현의 수위가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시정요구인이 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신문 편집의 자유를 벗어나 불공정한 보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8.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별지]

심의대상기사 목록

1. 2026년 2월 11일자 12면 「섬김과 진심의 정치로 순창을 더 크게!」 제하의 광고
2. 2026년 3월 4일자 1면 「최영일 군수 친동생, 쌍치 방산 하천부지 불법·무단 사용」 제하의 기사
3. 2026년 3월 4일자 2면 「최영일 군수, 불법·파렴치범...부적격 단체장 지목돼」 제하의 기사
4. 2026년 3월 4일자 2면 「오은미 도의원, 출판 기념식 ‘오은미의 꿈’ 전해」 제하의 기사
5. 2026년 3월 11일자 1면 「최영일 군수 친동생, ‘불법 시인」 제하의 기사
6. 2026년 3월 18일자 1면 「최영일 군수 동생, 소나무 40여 그루 ‘불법 반출」 제하의 기사
7. 2026년 3월 18일자 1면 「최영일 군수, 2022년 군수 선거 ‘펀드 미상환’ 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8. 2026년 4월 29일자 1면 「오은미 군수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제하의 기사
9. 2026년 4월 29일자 1면 「오은미 군수 예비후보 기자회견 최영일 군수 관련 4대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10. 2026년 5월 6일자 1면 「옥천인재숙 사생수척 인권 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11. 2026년 5월 6일자 1면 「최영일 군수, 오은미 예비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제하의 기사
12. 2026년 5월 13일자 1면 「최영일 군수, 예비후보 등록」 제하의 기사
13. 2026년 5월 13일자 1면 「군민 23명, 최영일 군수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14. 2026년 5월 20일자 1면 「군민 25명, 최영일 군수 후보 고발」 제하의 기사
15. 2026년 5월 27일자 1면 「투표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제하의 기사
16. 2026년 5월 27일자 1면 「최영일 후보 ‘학력 의혹’ 제기돼」 제하의 기사
17. 2026년 5월 27일자 15면 「지방선거를 잘 합시다」 제하의 기사

결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재심2
(원심 : 제9회 지선-시심6)

재 심 청 구 인 주식회사 담양곡성타임스(담양곡성타임스)
전남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18, 2층
대표이사 한명석

재심청구대상 2026년 5월 26일자 1면 「“인물로 선택해달라던 정철원 후보의 민낯”」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제9회 지선-시심6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취재를 결정하였으며, 기사 작성 전 공문으로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나 내용증명을 통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짤막한 답변과 함께 협박성 답변만 보내올 뿐 그 외 반론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보도했는데 법정 제재를 받는다면 언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고, 상대 측으로부터 다수의 협박 전화를 받은 상태이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면서 원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본 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 청구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원심 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유권자 및 선거에 미칠 영향력과 양 당사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문 게재 및 주의사실 게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현 단계에서 원심 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와 같이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해당 결정 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8.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